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363호

2025년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등 공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2025(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을 공개합니다.

2025. 8. 28.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채용전형별 진행일정

공고게시	원서접수	1차 전형		2차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5.8.1.	25.8.12.~8.19.	8.21.	8.22.	8.26.	8.28.

■ 전형별 응시현황 및 채용 과정

채용 구분	채용 인원	접수 인원	경쟁률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최종 합격	예비 합격
				합격 인원	합격선	합격 인원	합격선		
공개경쟁	1명	6명	6 : 1	6명	—	4명	79.7	1명	3명

■ 전형단계 및 전형단계별 채용절차

전형단계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합격

전형절차	내용																	
1차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채용분야 관련 자격기준 적격 심사 ○ 합격기준 : 자격기준 적격자																	
2차 면접심사	○ 심사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내용 <table><tr><td>구분</td><td>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td><td>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td><td>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td><td>예의 · 품행 및 성실성</td><td>창의력 · 의지 력 및 발전가능성</td></tr><tr><td>점수(100점)</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d>20점</td></tr></table> ○ 합격기준 :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구분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 력 및 발전가능성	점수(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구분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 의지 력 및 발전가능성													
점수(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최종합격자	○ 면접심사점수 최고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채용규칙 제12조 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 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예정자의 임용 포기 또는 임용 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면접심사 합격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순으로 최대 3명까지 선정 ○ 예비합격자는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채용규칙 제12조(합격기준)>

- ①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7.10.24.)
- ② 필기시험은 매과목 40%,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개정 2019.10.16.)
- ③ 인적성직무능력검사의 경우 평균 60% 이상 득점자를 합격으로 한다. 단, 체육직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직의 경우 평균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개정 2019.05.13.)
- ④ 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균 7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23.01.27.)
- ⑤ 시험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9.05.13.)
 1. 취업지원 대상자(개정 2019.02.15.)
 2.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개정 2019.02.15.)
 3.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개정 2019.05.13.)
 4. 인적성직무능력검사 성적 우수자(개정 2019.05.13.)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에 있어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 ⑦ 필기시험 및 인적성직무능력검사의 경우,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0.03.06.)
- ⑧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04.09.)
- ⑨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해당 채용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04.09.)